

1. 개정이유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서류에 가스시설 등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를 기재토록 하여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가스폭발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및 해체신고서에 가스시설 등의 안전조치 여부 기재란 추가(안 별지 제5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5호서식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받은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부터 적용한다.

건축물 [] 해체 허가신청서
[] 해체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접수일자	처리일	처리기간
			7일(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관리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송달 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관리자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건축물	위치	
	연면적 합계 m²	해체 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

건축물 해체	사유						
	해체공사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석면 함유재 존치 여부 [] 천장재(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 지붕재(슬레이트 등) [] 천장단열재(석면포) [] 바닥재(아스타일 등) [] 파이프로온재(석면포) [] 그 밖의 사항 [] 해당 없음
가스시설 또는 가스배관 안전조치 여부 [] 철거 및 안전조치 완료 [] 철거 및 안전조치 예정(예정일:) [] 해당 없음 ※ 가스사업자명: (연락처:)
하수처리시설 철거 여부 [] 철거함 [] 철거하지 않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해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	예	지
---	---	---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작성한 해체계획서(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검토한 해체계획서(건축물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해체 대상 건축물 동별 개요

주/부속 구분	동 명칭	층수 (지상, 지하)	높이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특수구조 건축물 여부

※ 특수구조 건축물 여부란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 건축물이 여러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

유의사항

「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 항제9호·제10 호, 제51조의2제 1호, 제52조제7 호 및 제54조제 2항제8호·제9 호	1.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건축물의 해체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 전문가(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작성(검토)하지 않은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6.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처리한 후 건축물을 해체해야 합니다. 7. 건축물 해체 등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의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의3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에 따라 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8.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그 공사의 시행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3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

처리절차

건축물 해체허가의 경우	허가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건축 심의 또는 전문가 검토 등 → 허가서 작성 → 허가서 발급
	신청인 (관리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부서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계획서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 실시
건축물 해체신고의 경우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필요시) 건축 심의 또는 전문가 검토 등 → 신고 확인증 작성 → 신고 확인증 발급
	신청인 (관리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부서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계획서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 실시